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5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추경호·김희국·조수진

정희용 · 김용판 · 김정재

이종배 · 김석기 · 박덕흠

김예지 · 윤창현 · 윤한홍

허은아 · 이명수 · 윤재옥

김성원 · 양금희 · 김도읍

의원(18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소비 급감, 개학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농촌관광 수요 감소, 외국인 이동제한으로인한 농업인력 부족 등 농업부문에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농어민들은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의 농어업인 관련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이들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연장되지 않고 일몰될 경우 농어민의 소득 감소, 생산비 폭등과 농어업분야 투자 기피로 인한 농어업경쟁력 하락, 농어민들의 자경·출어의욕 저하, 후계 농어업인의 육성 차질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큼.

이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축사용지 및 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 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 2, 제69조의3)
-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 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1조 제1항).
-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 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 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 마.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 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 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 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99조 의4제1항).
- 사.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아.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 2. 2024년 1월 1일부터 받는 배당소득등 : 100분의 9 제89조의3제1항 중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을 "2007

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2항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 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 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2월 31일----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 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

② ~ ④ (생략)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u>2022년 12월 31일</u>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 ·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 초지 · 산림지 · 어선 · 어 업권 · 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 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 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

		· — — — ·		- – – – -		
		.				
	2	~ ③	(현행	과 같	음)	
제	713	스(영농	'자녀기	가 증	여받	는 농
	지	등에	대한	증여	세의	감면)
	1					

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 (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 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② ~ ⑧ (생 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 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 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 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 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u>2022년 12월 31일</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u>2022년 12월 31일</u>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 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 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 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 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 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1. ~ 8. (현행과 같음)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저 대한 과세특례) 농민 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중 2020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 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 소득 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대해시는 소득세 중역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대한 과세특례)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중 <u>2020</u>	<u>2022</u>
<u>년 12월 31일</u> 까지 받는 배당소	<u>년 12월 31일</u>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	
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	
소득 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등: 100분의 5

2. 2022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14 근	OI	= '/ '		<u>- "II C</u>) — 1
	등:	100분	의 5)		
2	. 202	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00분		
제8					 금에	대한
ス] 율고	·세 -	등) (<u>1</u>)		
_						
_						
_						
_						
_						
_						
-						
_						
_	<u>20</u> 0)7년	1월	1일년	부터 20	<u>022년</u>
<u>1</u> :	2월	<u>31일</u>				
-						
20	023년	1월	. 1일	부터	20231	<u>년 12</u>
월	31	일				
_						
_						
_						
_						
_						
-						
_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 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 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 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 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② 2024년 1월 1일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u>2022년</u>
12월 31일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 1. 2. (생략)
- ② ~ ⑦ (생 략)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경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다.
 - 1. ~ 6. (생략)
 - ② (생략)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지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u>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u>a</u>) ①
8) ①
2022년 12월
 31일
· 1. ~ 6. (현행과 같음)
1. 0. (년 8년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 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 ~ 21. (생 략)

③ ~ ⑤ (생략)

<u>2022년 12월</u>
31일
1. ~ 21. (현행과 동일)
③ ~ ⑤ (현행과 동일)